#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27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 손명수 · 김남근 · 이연희

민형배 · 김한규 · 송기헌

남인순 · 김태년 · 윤종군

문정복 · 김원이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운송 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에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나, 운전자 나이·차령·시장진입 비용· 물량확보 방법·운송수입 및 지출 구조 등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 계의 작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 신설).

#### 법률 제 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9(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 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 의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운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l> <li></li> <li>✓신 설&gt;</li> <li>제5조의9(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관리와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li> <li>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되,필요한 경우통계청장과 혐의할 수 있다.</li> <li>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운</li> </ul>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운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